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9

제출년월일 : 2007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산정방법 삭제 (안 제29조)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비율 적용(안 제32조)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 1981년4월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 조정 (안 제40조)

-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 명확화
-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면적(500㎡)이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면적(1,000㎡)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1호 삭제
-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을 200㎡로 한정(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준수)

○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삭제로 인한 같은 조항 제5호의 매각기준 명시

○ 분수림 규정 삭제 (안 제44조)

-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 개정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조정 (안 제64조)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3. 의 안 전 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 계 법 령 : 붙 임

첨부 1. 관계법령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제1항 중 "영 제27조제8항"를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5호중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를 "시가 소유한 지

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삭 제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①**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①**영 제42조** ----------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삭 제 >**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2. ~ 3. (현행과 같음) 4.---------- ---------- ---------- ---------- ----------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 ---------- ----------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 ---------- ---------- ---------- ---------- ---------- ---------- ---------- ---------- ----------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5. ----------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 ----------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3,000만원**---------- 1. ---------- ---------- **600만원**------- ---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 **300만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취 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별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 삭 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06.12.30 개정)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내용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내용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 적용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4호와 통합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삭 제 >	-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 명확화 - ⓐ의 면적이 ⓑ의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1호 삭제 ⓐ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서 기 규정한 사항(200㎡)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제5호 자구수정 - 제1항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 면적 명시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 삭 제 >	○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06.12.30 개정) - 산림법[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2호]에서 분수림 규정 삭제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06.12.30 개정) -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계산의 평가)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 · 10 · 27, 2006·12·30>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4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시행일 2007.10.7,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4호]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46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7.2.12 대통령령 제19883호]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355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9.

제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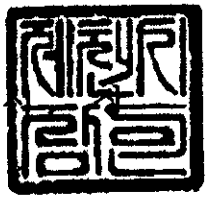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산정방법 삭제 (안 제29조)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비율 적용(안 제32조)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다. 1981년4월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 조정 (안 제40조)
-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 명확화
-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면적(500㎡)이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면적(1,000㎡)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1호 삭제
-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을 200㎡로 한정(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 준수)

라.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삭제로 인한 같은 조항 제5호의 매각기준 명시

마. 분수림 규정 삭제 (안 제44조)
-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 개정

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조정 (안 제64조)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46, FAX 641 - 5559 담당자 : 조호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